(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124호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근무내용 : 문화예술(디지털드로잉), 카페보조, 방역소독, 환경정리 등

○ 근 무 지 : 복지관 내 또는 **인근 지역 기관** 등

○ 보 수 : **월561,680원(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 참여자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0명 (복지일자리 / 참여형 20명)**

○ 모집분야 : 문화예술(디지털드로잉), 카페보조, 방역소독, 환경정리 등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2.(금)

○ **접수기간 : 2024. 11. 18.(월) ~ 11.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접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일자리유형(복지), 수행기관(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으로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희망직무 기재**) 1부.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확인사항 유무 작성) 1부.

※ 장애등록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근로 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의사진단서 등)

☞ 신청 당시 취업자 중 퇴사 예정자는 증빙서류 첨부(근로계약서 등)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서식3]** 1부.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

④ (해당자에 한함) 아래 표(▼) 해당자는 서류 제출

<table>
<tr><th>구분</th><th>증빙서류</th></tr>
<tr><td>① 자격증 소지자</td><td>-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직무 관련 교육 이수시 수료증 등 제출</td></tr>
<tr><td>② 졸업예정자</td><td>-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td></tr>
<tr><td>③ 여성가장</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첨 부 서 류</th></tr>
<tr><td>공통사항</td><td colspan="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tr>
<tr><td rowspan="11">선택사항</td><td>부모 부양시</td><td>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td></tr>
<tr><td>가출 . 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
<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td>질병으로 요양 중</td><td>의사의 진단서</td></tr>
<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
<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
<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
<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
<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
</td></tr>
<tr><td>④ 취업지원대상자</td><td>-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tr>
<tr><td>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td><td>-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td></tr>
</table>

[여성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024. 12. 31.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인 자(1960. 1. 2. 이전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1년 만근 시에도 퇴직금 미지급**

예)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 시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현장접수 또는 이메일 (gk2ylsd@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6월 2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복지관 홈페이지(hmsrehab.or.kr)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홈페이지 > 복지관소식 > 채용정보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검색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협력팀 (☎031-893-2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 1부.

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붙임 **(복지일자리-참여형)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

※ 지원요건 및 우대조건 필수 확인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명)

연번	수행직무	지원요건 및 우대조건	선발인원	비 고
계			20	
1	사무보조	컴퓨터 활용 가능자	1	
2	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	관련 교육 수료증, 관련 직무 유경험자	1	
3	방역소독	관련 교육 수료증	2	
4	환경정리	기초 체력 중요	4	
5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료증, 관련 직무 유경험자	4	디지털드로잉
6	디앤디케어	관련 직무 유경험자 (자원봉사활동도 가능)	2	
7	카페보조	관련 자격증	4	
8	교통안전지킴이	관련 직무 유경험자 (자원봉사활동도 가능)	1	
9	무인단말기 안내	상호적 의사소통 원활한 자	1	

※ 수행직무 및 선발인원은 기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근무장소)는 최종 선발 이후 통보됩니다.

[서식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 업 예 정 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 수 번 호	*oo동 – 001*
일자리 유형 (택1)	□ 일반형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	1순위	*(수행기관명)*	2순위	*(수행기관명)*
희 망 직 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성 명			연락처	[본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 득 수 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여 성 가 장		□ 해당 □ 비해당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 애 유 형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자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직업 훈련	기 관 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 격 면 허		1) 2)	전 산 능 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 업 상 태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일자리사업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유 □ 무 *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본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2024 11.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필수)[서식3]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고) 각 1부.

[서식 2]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_____

연락처:_____

구 분	확 인 사 항	
장애인등록 여부	□ 장애인	□ 비장애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해당	□ 미해당
미취업 상태 여부	□ 취업	□ 미취업
임직원 겸임 여부*	□ 해당	□ 미해당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4. 11.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수원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 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 · 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고유식별정보 즉시 파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 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 · 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민감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수준,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득 수준, 성별, 주소, 연락처, 보수액, 사업 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3항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 코드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로 대체 가능), 참여사업명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2024. 11. .

성 명: (서명 또는 인)